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335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무궁화캐피탈㈜

2. 조치내용

□ 기관에 대한 조치

◦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상 ‘대주주 신용공여 보고·공시 의무 위반’으로 과태료 7,200만원 부과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기 관

1. 대주주 신용공여 보고·공시 의무 위반

◦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49조의2 제3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(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)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(이하 ‘기준금액’)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①신용공여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, ②분기별*로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규모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

* 매 분기 말일부터 1개월 이내

- 무궁화캐피탈㈜은 20xx. x. xx.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♥♥♥♥♥♥♥♥♥♥에 대하여 기준금액(xx.x백만원) 이상인 대출 xx억원을 취급하였으나, 동 ①신용공여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으며, ②이후 20xx년 x분기부터 20xx년 x분기까지 x차례에 걸쳐 동 대출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에 포함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

나. 근거법규

□ 기관에 대한 조치

○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, 제49조의2 제3항 및 제4항, 제72조 제1항
○ 「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」 제2조의4 제1항, 제19조의2 제1항, 제19조의3 제1항, 제19조의4 제1항 및 제2항, 제26조 [별표4]
○ 「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」 제5조의7 제2항, 제3항 및 제4항
○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2조
○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 제1항
○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
○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 제1항